

연인관계 종결 후 스토킹 행위를 하는 일반 성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혜지* 이지혜** 성나경*** 성현준*** 강지은**** 홍동규****
립디(주)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충청북도경찰청 경기대학교 제주경찰청

본 연구는 일반 성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인관계 종결 후 스토킹 시도 경험, 개인의 성별, 상대와의 첫 만남 특성에 따라 스토킹 위험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헤어진 연인과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자(남성 51명, 여성 68명)의 질문지와 접수 상담일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남성의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미행, 자해 및 자살 위협과 같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 가해자 위험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가 남성에 비해 높았다. 둘째,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진 남성의 경우 고용 및 재정문제와 관련된 가해자 위험요인을 더 많이 보였으며, 여성은 오프라인 만남으로 관계를 시작한 경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점진적 심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자가 아니라더라도 일반인 간의 교제에서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스토킹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재회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성별, 첫 만남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례를 구조화 시키고,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재회상담 현장에서 스토킹 위험성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대상자 교육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토킹, 재회상담, 성별 차이, 첫 만남 경위, 온라인 만남, 오프라인 만남

이 논문은 2023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R&D 지원사업, 과제번호: 2023-KOITA-RND1-2-1)

* 주지자: 강혜지/립디(주) 선임상담사/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8
/E-mail: vitamin_0209@hotmail.com

** 교신저자: 이지혜/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leeji@j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집을 쫓아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던 가해자의 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세계일보, 2019). 이후 2021년 서울 노원에서는 게임으로 피해자를 만나 호감을 표현했던 가해자가 만남을 거부당하자 다른 사람인 척 온라인에서 다시 접근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21). 세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발생 13일 전 미성년자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2021). 이렇듯 스토킹을 매개로 한 강력범죄 사건 보도가 연일 쏟아지며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재고되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 감소되었을까? 2022년 9월 서울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를 당했고, 2023년 7월 인천에서는 전 연인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한겨레, 2023).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당장의 스토킹 예방효과는 다소 미미하게 인식되나, 이러한 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인식의 향상과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법률적으로 모든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행위 자체가 곧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의 존재 여부 외에도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스토킹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야 이를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 폭행,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현아, 2015) 사소한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토킹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대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토킹 연구는 일반인들의 스토킹 통념 및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권혜림, 2022; 이승희, 이창배, 2023). 스토킹 위험성을 보이는 일반인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스토킹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위험성을 평가하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별 후 재회를 희망하는 일반 성인 대상자들 중 스토킹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하였다. 나아가 성별, 첫 만남 경위에 따른 스토킹 행위와 개인의 취약점을

*** 공동저자: 성나경/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겸임교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82

*** 공동저자: 성현준/충청북도경찰청 경장/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 순환로 168

/E-mail: sungtt@naver.com

**** 공동저자: 강지은/경기대학교 범죄심리교정심리학전공 강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E-mail: kang.jieun@kyonggi.ac.kr

**** 공동저자: 홍동규/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겸임교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

/E-mail: hongdonggyu@police.go.kr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의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 행위에는 위에서 기술한 내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동법 동조 2호).

스토킹 행위를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범죄라고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은 파괴된다. 이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스토킹’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이건호 외, 2002, Gross, 1999).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토킹의 발생률은 15%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2~4배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다(McEwan & Path, 2014).

2.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국가별 대처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며,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인 경우도 많다(김성희, 이수정, 2022).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주법과 연방법 모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2261A조제1호에 따라,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연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스토킹 행위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며, 스토킹 피해 경중에 따라 형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고 중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1997 괴롭힘방지법」 제2A조와 제2B조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 접촉하는 행위”, “진술 또는 기타 자료게시, 인터넷, 이메일 또는 여러 형태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 감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로 유죄판결 시, 51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기준 5단계(5,000 「2020 양형법」 제122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 한다.

독일 형법 제238조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 제4호). 또한, 스토킹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최소 3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자유형으로 처벌한다(제238조 제2항).

일본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2년 법률 제81호)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스

토키 행위”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등(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 전자메일 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 또는 위치정보 무승낙 취득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스토키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금지명령 등을 어기고 스토키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약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 룩셈부르크,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은 스토킹 행위를 법률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러시아, 태국, 프랑스 등처럼 스토킹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의 개별조항에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되었고,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다수의 범죄들이 보도되면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및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조장하기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및 제2호).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스토킹 가해자 특성 및 범칙의 유형

스토킹 가해자가 보이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앞서 진행되었다. 우선 스토킹 가해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꼽을 수 있는데, Meloy와 Gothard(1995)는 이를 ‘강박적인 추구(Obsessional following)’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적인 몰두와 집착과 같은 인지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Meloy, 1996; Meloy, Rivers, Siegel, Gothard, Naimark, & Nicolini, 2000). 이와 같은 스토킹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데 기여하는데, 피해자를 오랫동안 스토킹 하는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끊겨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며, 성적인 망상에 이끌리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Mullen et al., 2006). 이 외에도 스토킹 가해자는 자기애적 환상에 기인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더욱 강박적으로 집착한다(Meloy & Fisher, 2005). 많은 수의 스토킹 가해자는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가지는데(Mullen et al., 1999; Roberts, 2002), 이들이 가지는 분노감이 발현될 경우 피해자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병적인 질투는 스토킹 행동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되기도 한다(Meloy & Fisher, 2005).

스토킹 가해자의 애착 유형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일반 사람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Tonin, 2004), 부모에 의해 정서적으로 방임되는 환경에서 양육된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Mackenzie, Mullen, Ogloff, McEwan, & James, 2008). 또한 스토킹 가해자는 감정적이고 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B군 성격 장애(반사회, 히스테리, 자기애성, 경계성 성격장애)

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외에 스토킹 가해자가 물질남용, 기분장애, 적응장애 등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Meloy & Gothard, 1995).

스토킹 범죄를 유형화하여 이해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그 중 가·피해자의 관계로 스토킹 유형을 구분한 RECON 스토킹 유형 분류 체계는 스토킹 범죄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 전략 결정을 위해 제작되었다(Mohandie, 2004; Mohandie, et al., 2006). 이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스토킹을 “친밀한(Intimate) 관계, 지인(Acquaintance) 관계, 공인(Public Figure), 일반 낯선 사람(Private Stranger)”으로 분류하였다(Mohandie, 2004). RECON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전 관계에서의 친밀감 정도가 폭력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Mohandie et al., 2006). RECON 유형 분류 체계의 4가지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RECON의 스토킹 4가지 유형

가·피해자 간의 관계	세부적 관계 유형
전 관계·사적 인물 맥락 (Previous relationship · private figure context)	친밀한(Intimate) 관계: 결혼(사실혼 포함)·동거·연인·성적 관계 등
	지인(Acquaintance) 관계: 직장 등 사회적인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affiliative)·친목·고객·의뢰인 등 친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관계
전 관계없음 또는 제한적·우발적 접촉 (No prior relationship or limited·incidental contact)	공인(Public Figure): 공인·유명한 인물을 좇음 낯선 사람(Private Stranger): 공인 아님, 낯선 일반인 좇음

출처: (Mohandie et al., 2006)

Sheridan 외 동료들이 연구한 스토킹 범죄 유형도 가·피해자와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헤어진 파

트너 스토킹’, ‘짝사랑 스토킹’, ‘망상성 집착 스토킹’, ‘가학적 스토킹’으로 총 4가지 유형을 주장하였다. 이중 헤어진 파트너 스토킹의 경우 부정적인 과거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통해 공격성을 외현적으로 발휘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신체·정서·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보였다(Sheridan et al., 2003).

스토킹 유형은 관계 뿐만 아니라 원인과 방법적 측면으로도 구분되었다. LA경찰국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스토커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 스토킹 행위를 ‘연애 망상형’, ‘애정 집착형’, ‘단순 집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애 망상형’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 망상적 사고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망상적 사고는 정신질환에 기인한다(Zona et al., 1993). ‘애정 집착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애정의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경우이며, ‘단순 집착형’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Zona et al., 1993).

Mullen, 외 동료들은 스토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친밀형(Intimacy Seekers), 거부형(Rejected), 무능형(Incompetent), 분노형(Resentful), 약탈형(Predatory)이다(Mullen et al., 2009). 이 유형 중 거부형은 전·현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관계가 부정적으로 종료된 이후 복수의 감정을 갖고 스토킹을 하는 유형으로 특히 헤어진 파트너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나아가 폭력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닌다(이건호, 2023).

4. 헤어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과 이별한 파트너 대상 스토킹(Post-Separation Stalking, PSS)은 과거 친밀한 관계였지만 헤어진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대부분 발생하며,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된다(Senkans et al., 2021).

헤어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납득하지 못한 이별을 한 대학생에게 흔하게 발생하며(Langhinrichsen-Rohling et al., 2002),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De Smet et al., 2012; 2013).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별을 통보받으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만나고자 노력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과 스토킹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이별 과정과 스토킹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urcell과 동료들(2004)에 따르면, 헤어진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2주 이상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심어주고 이후 더 위험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Thompson과 Dennison(2008)은 스토킹 행위의 기간보다 스토킹 횟수와 행동양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파트너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정리해야 하는 용건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접촉 횟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거나 관계 정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5개 이상일 때, 그리고 폭행 등 심각한 스토킹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5.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 행위의 성차

헤어진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는 최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PRS 가해 행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고려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성별에 따른 PRS 행위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헤어진 파트너에게 PRS 행위를 더 많이 하였고, 폭행 등 심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PRS의 지속기간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 PRS 행위자는 여성 PRS 행위자에 비하여 더 오랜 기간 스토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nkans & McEwan, 2023). PRS 행위의 유형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PRS 행위자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더 많이 하였고, 여성 PRS 행위자는 정서적 학대와 감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gan, Cole, Shannon & Walker, 2000). 성별에 따른 PRS 피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불안, 우울, 두려움, PTSD 등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여성 PRS 피해자는 남성 PRS 피해자에 비하여 신체적 부상과 사망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nkans & McEwan, 2023).

6. 첫 만남 경위에 따른 헤어진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만남 경위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 관계의 양상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Johnson & Wood, 2023), 만남경위에 따른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는 만남 경위에 따른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 연구가 전무하고,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Johnson과 Wood(2023)에 따르면 첫 만남 경위가 온라인이면서 헤어진 파트너를 대상으로 스토킹

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우에 비하여 스토킹의 발생률이 더 높았고,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도 더욱 심각하였다. Johnson과 Wood(2023)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며 온라인 특성에 주목하였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하여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만남 경위에 따라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 행위의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헤어진 전 연인과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스토킹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스토킹 행위 유형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첫 만남의 방법을 구분하여(온라인,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와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담 등 실무에서 스토킹 범죄 위험군을 예측·분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연구참여자 수집 방법

연구참여자 수집은 2022년 1월~2023년 10월까지 실제 헤어진 전 연인과 재회를 희망해서 재회상담 기업(L사)에 상담을 요청한 고객 약 40,000건을 대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비식별 처리한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얻은 320명의 초기 질문지와 접수 상담지를 검토 및 평가해 이루어졌다. 상담 일지의 경우에는 내담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와 욕구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이미경, 2012) 상담자의 개인차에 따라 내용의 축

소, 삭제될 가능성과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초기 진단지와 상담일지는 대상자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보화, 2019)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회상담 초기 질문지는 이별 후 재회를 위해 대상자들의 감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초기 질문지는 자유롭게 서술형식으로 작성되지만, 예시 문구를 사용함으로 사용자가 통일된 방식으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항목으로는 내담자의 성별 및 나이, 대상자 성별 및 나이, 첫 만남 경위, 만남 기간, 이별 사유, 재회를 위한 내담자의 행동, 재회 희망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사용자의 생각 및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작성 체계는 온라인상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온라인에 접속해 초기 질문지를 작성한다.

접수 상담지는 실제 접수요원(상담자)이 내담자가 작성한 것을 통해 면접을 진행한 뒤에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된다. 공통적으로 질문되는 내용으로는 재회 희망 사유와 동기, 재회를 하기 위한 내담자의 구체적 행동 및 가치관, 내담자의 강점과 취약점, 정신건강 등 통일된 질문 이외에 내담자의 개인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대상자의 성별 및 첫 만남 경위, 이별 사유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201부를 제외한 119명(남: 51명, 여: 68명)의 자료를 최종 선정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19)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1명	42.9%
	여	68명	57.1%
연령	10대	1명	0.8%
	20대	60명	49.7%
	30대	49명	41.1%
	40대	8명	7.6%
	50대	1명	0.8%
직업	사무직	37명	31.1%
	학생	15명	12.6%
	취업준비생(무직)	7명	5.9%
	공무원	12명	10.1%
	서비스직	13명	10.9%
	자영업	14명	11.8%
	생산직	3명	2.5%
	전문직	18명	15.1%
관계	헤어진 연인	109명	91.8%
	지인	1명	0.8%
	연인 전 단계	4명	3.3%
	연인(이별 전)	3명	2.5%
	결측	2명	1.6%
만남경위	온라인	32명	27.0%
	지인	40명	33.6%
	소개팅	25명	21.0%
	길거리 만남	7명	5.8%
	결측	15명	12.6%
교제기간	0~1년	63명	52.9%
	1~2년	21명	17.6%
	2~3년	11명	9.2%
	3년 이상	21명	17.6%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제 재회상담을 요청한 대상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초기 질문지와 접수 상담지(1회기) 내용을 바탕으로 이수정 등(2023)이 개발한 스토킹 고위험군 식별을 위한 범죄심리학적 판

단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스토킹 행위와 위험요인을 계량화하였다. 스토킹 위험성 평가표(Korea Stalking Assessment Scale: K-SAS)는 스토킹 범죄 특성(10문항), 가해자 위험요인(10문항), 피해자 취약요인(7문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범죄 특성 10가지(미행 및 감시, 온·오프라인 연락, SNS정보 수집 및 유포, 가스라이팅, 협박 및 자해위협, 신체적 폭력, 온·오프라인 성폭력, 스토킹 지속성, 스토킹 점진적 심각성, 112 신고 유무)를 초기 진단지 및 접수 상담지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유형 행위 없음은 0, 있음은 1로 이분하여 코딩하였다. 원 스토킹 위험성 평가표에서는 3점 척도(0, 1, 2)를 이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기 질문지와 접수 상담일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하므로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해당 스토킹 행위의 유무로 이분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해자 위험요인 10개 항목인 분노와 적대감, 집착, 반사회적 생활양식, 정신건강 문제, 일방적 사고, 반성의 부재, 대인관계 문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문제, 물질 사용, 고용 및 재정적인 문제는 진단지와 접수 상담일지의 내용을 한국판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예시와 평가체계에 따라 0(없음), 1(있음)으로 코딩하였다. 정신건강 문제는 실제 대상자가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을 처방 받는 대상을 이분법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 질문지와 접수 상담지는 재회상담을 요청한 대상자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평가표의 피해자 취약요인 코딩 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취약요인은 코딩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남 1, 여 2), 교제기간(개월), 대상자 성별(남 1, 여 2), 첫 만남 경위(온라인 1, 오프라인 2)를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코딩은 교육학 박

사 1인, 심리학 박사 3인, 상담·코칭전공 석사 1인, 인문학 학사 1인이 교차 점검하여 진단지와 접수면 접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스토킹 시도 여부에 따른 집단간 스토킹 위험성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종결 후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집단과 스토킹을 하지 않았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을 대조하였을 때 집단 간 연령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교제했던 연인의 나이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토킹 행위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스토킹 범죄 특성으로는 미행, 감시, 온·오프라인 연락, SNS정보 수집 유포, 가스라이팅,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 자해·자살 위험, 스토킹 지속성 및 심각성이 있었으며, 가해자 위험요인으로는 분노 및 적대감, 병적 집착·의심, 정신건강 문제, 일방적 사고, 반성의 부재, 대인관계 문제가 있었다. 한편, 스토킹 범죄 특성 중 신체·성폭력, 경찰 출동 여부와 함께 가해자 위험요인 중 반사회적 생활양식, 물질사용 문제, 고용 및 재정문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스토킹 시도 여부에 따른 스토킹 위험성의 차이

구분	스토킹 X (57명)	스토킹 O (62명)	t
	M(SD)	M(SD)	
인구 학적 특성	연령	30.00(5.27) 30.85(6.30)	-0.79
	교제대상자의 연령	29.89(5.32) 29.03(5.60)	0.85
	교제기간(개월)	19.61(23.48) 21.05(20.06)	-0.35

구분	스토킹 X (57명)	스토킹 O (62명)	t
	M(SD)	M(SD)	
스토킹 범죄 특성	미행	0 0.62(0.87)	-5.43***
	감시	0.18(0.13) 0.77(0.93)	-6.08***
	온·오프라인 연락	0.28(0.52) 1.54(0.69)	-11.02***
	SNS정보 수집·유포	0.10(0.36) 1.11(0.97)	-7.33***
	가스라이팅 (심리적 통제)	0 0.29(0.66)	-8.55***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	0 0.29(0.66)	-3.30***
	자해·자살 위험	0 0.35(0.72)	-3.68***
	신체적 폭력	0 0.03(0.25)	-0.95
	성폭력	0 0.04(0.21)	-1.68
	스토킹 지속성	0 0.74(0.74)	-7.51***
	스토킹 심각성	0 0.61(0.81)	-5.66***
	경찰 출동 여부	0 0.08(0.32)	-1.85
	분노 및 적대감	0.18(0.13) 0.67(0.88)	-5.58***
	병적 집착·의심	0.07(0.25) 1.19(0.90)	-9.01***
	반사회적 생활양식	0.01(0.13) 0.09(0.39)	-1.44
가해자 위험요인	정신건강 문제	0.10(0.36) 1.13(0.95)	-7.59***
	일방적 사고	0 0.83(0.90)	-6.96***
	반성 부재	0 0.74(0.86)	-6.45***
	대인관계 문제	0.15(0.52) 0.79(0.85)	-4.81***
	물질사용 문제	0.03(0.26) 0.04(0.28)	-0.26
고용 및 재정문제	0.10(0.30) 0.25(0.57)	-1.79	

주: **p<.01, ***p<.001

2. 스토킹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위험성 차이검증

다음 단계로, 연인관계 종결 후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일반 성인 중 성별에 따른 스토킹 범죄 특성 및 가해자 위험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대상만을 선택하여, 성별을 집단변인으로 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스토킹 범죄 특성 중 미행, 자살·자해 위협, 가해자 위협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행과 자살·자해 위협은 남성이 주로 많이 시도한 스토킹 범죄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여성에서 가해자 위협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스토킹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위협성의 차이

구분	남성 (35명)	여성 (27명)	t	
	M(SD)	M(SD)		
인구학적 특성	연령	31.60 (6.43)	29.88 (6.12)	1.06
	교제대상자의 연령	29.02 (5.43)	29.03 (5.91)	-0.00
	교제기간(개월)	24.72 (22.07)	16.38 (16.43)	1.60
스토킹 범죄 특성	미행	0.82(0.98)	0.37(0.62)	2.10*
	감시	0.82(1.04)	0.70(0.77)	0.52
	온·오프라인 연락	1.55(0.66)	1.51(0.75)	0.22
	SNS정보 수집·유포	1.05(0.99)	1.18(0.96)	-0.50
	가스라이팅 (심리적통제)	0.97(0.98)	1.18(0.87)	-0.88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	0.25(0.65)	0.33(0.67)	-0.44
	자해·자살 위협	0.51(0.85)	0.14(0.45)	2.01*
	신체적 폭력	0.05(0.33)	0	0.87
	성폭력	0.02(0.16)	0.07(0.26)	-0.81
	스토킹 지속성	0.80(0.83)	0.66(0.62)	0.69
	스토킹 심각성	0.62(0.87)	0.59(0.74)	0.17
	경찰 출동 여부	0.11(0.40)	0.03(0.19)	0.91
	분노 및 적대감	0.57(0.81)	0.81(0.6)	-1.07
	병적 집착·의심	1.17(0.89)	1.23(0.95)	-0.25
	반사회적 생활양식	0.11(0.40)	0.07(0.38)	0.39
가해자 위협 요인	정신건강 문제	0.88(0.90)	1.46(0.90)	-2.41*
	일방적 사고	0.68(0.90)	1.03(0.89)	-1.52
	반성 부재	0.74(0.91)	0.74(0.81)	0.00
	대인관계 문제	0.71(0.82)	0.88(0.89)	-0.79
	물질사용 문제	0.05(0.33)	0.37(0.19)	0.27
고용 및 재정문제	0.22(0.54)	0.26(0.60)	-0.46	

주: * p<.05

3. 첫 만남 경위에 따른 스토킹 위협성 차이검증

일반 성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연인관계로 만나게 된 경위가 온라인을 통한 방식이었는지, 오프라인을 통한 방식이었는지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스토킹 위협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만남주선 어플, 게임, 카페 회원 등의 방식은 온라인 만남으로, 지인, 소개팅, 길거리 만남 등은 오프라인 만남으로 구분하였다. 첫 만남의 방식에 따른 스토킹 위협성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프라인 첫 만남 집단의 경우 스토킹의 심각성이 온라인 첫 만남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온라인 첫 만남 집단은 오프라인 첫 만남 집단에 비해 가해자 위협요인 중 고용 및 재정문제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첫 만남 경위에 따른 스토킹 위협성의 차이

구분	온라인 (32명)	오프라인 (72명)	t	
	M(SD)	M(SD)		
인구학적 특성	연령	30.31(4.97)	30.52(6.35)	-0.19
	교제대상자의 연령	29.00(3.86)	29.73(6.30)	-0.71
	교제기간(개월)	19.35(19.85)	20.97(22.95)	-0.38
스토킹 범죄 특성	미행	0.21(0.50)	0.40(0.79)	-1.44
	감시	0.29(0.62)	0.48(0.85)	-1.29
	온·오프라인 연락	0.74(0.79)	1.05(0.92)	-1.89
	SNS정보 수집·유포	0.59(0.87)	0.65(0.92)	-0.33
	가스라이팅 (심리적 통제)	0.51(0.83)	0.58(0.88)	-0.44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	0.17(0.52)	0.13(0.48)	0.33
	자해·자살 위협	0.19(0.57)	0.13(0.48)	0.10
	신체적 폭력	0.43(0.29)	0	1.24
	성폭력	0.43(0.20)	0.01(0.11)	0.97
	스토킹 지속성	0.25(0.53)	0.47(0.71)	-1.79
	스토킹 심각성	0.17(0.48)	0.41(0.74)	-2.00*
	경찰 출동 여부	0.04(0.20)	0.04(0.26)	0.02

구분	온라인 (32명)	오프라인 (72명)	t	
	M(SD)	M(SD)		
분노 및 적대감	0.29(0.65)	0.40(0.76)	-0.77	
병적 집착·의심	0.57(0.82)	0.70(0.91)	-0.78	
반사회적 생활양식	0.06(0.32)	0.05(0.28)	0.14	
가해자 위험 요인	정신건강 문제	0.76(0.96)	0.54(0.84)	1.29
	일방적 사고	0.44(0.77)	0.43(0.78)	0.11
	반성 부재	0.34(0.70)	0.41(0.74)	-0.55
	대인관계 문제	0.59(0.82)	0.41(0.74)	1.22
	물질사용 문제	0.06(0.32)	0.02(0.23)	0.70
	고용 및 재정문제	0.29(0.58)	0.11(0.35)	2.15*

주: * p < .05

4. 첫 만남 경위와 성별에 따른 스토킹 위험성 차이 검증

마지막 단계로 첫 만남의 경위와 성별을 중심으로 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스토킹 위험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성의 경우 온라인 만남 집단이 오프라인 만남 집단에 비해 비용 및 재정문제라는 가해자 위험요인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오프라인 만남 집단이 온라인 만남 집단에 비해 스토킹 범죄 특성 중 스토킹 지속성과 심각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남성은 온라인 만남의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오프라인 만남의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첫 만남 경위와 성별에 따른 스토킹 위험성의 차이

구분	온라인 (남14, 여33)	오프라인 (남37, 여35)	t	
	M(SD)	M(SD)		
인구 학적 특성	연령	남 29.78(4.64)	31.05(6.59)	-0.65
		여 30.54(5.16)	29.97(6.13)	0.41
교제대상자 의 연령	남	28.07(3.10)	28.73(5.87)	-0.39
	여	29.39(4.13)	30.80(6.65)	-1.04

구분	온라인 (남14, 여33)	오프라인 (남37, 여35)	t	
	M(SD)	M(SD)		
교제기간 (개월)	남	24.25(29.12)	20.21(20.17)	0.53
	여	17.57(15.43)	21.79(25.92)	-0.80
미행	남	0.42(0.75)	0.62(0.98)	-0.68
	여	0.12(0.33)	0.17(0.51)	-0.47
감시	남	0.50(0.82)	0.62(0.98)	-0.40
	여	0.21(0.48)	0.34(0.68)	-0.90
온·오프라 인 연락	남	1.07(0.82)	1.22(0.86)	-0.55
	여	0.60(0.74)	0.88(0.96)	-1.33
SNS정보 수집·유포	남	0.64(0.84)	0.78(1.00)	-4.66
	여	0.57(0.90)	0.51(0.81)	0.29
가스라이팅 (심리적 통제)	남	1.00(1.03)	0.54(0.86)	1.59
	여	0.30(0.63)	0.62(0.91)	-1.69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	남	0.35(0.74)	0.10(0.45)	1.44
	여	0.09(0.38)	0.17(0.51)	-0.72
스토킹 범죄 특성	자해·자살 위험	남 0.57(0.93)	0.27(0.65)	1.30
		여 0.30(0.17)	0.86(0.37)	-0.77
신체적 폭력	남	0.14(0.53)	0	1.65
	여	0	0	0
성폭력	남	0.07(0.26)	0	1.65
	여	0.30(0.17)	0.29(0.16)	0.04
스토킹 지속성	남	0.57(0.75)	0.54(0.80)	0.12
	여	0.12(0.33)	0.40(0.60)	-2.34*
스토킹 심각성	남	0.35(0.74)	0.45(0.80)	-0.41
	여	0.09(0.29)	0.37(0.68)	-2.16*
경찰 출동 여부	남	0.14(0.36)	0.05(0.32)	0.83
	여	0	0.02(0.16)	-0.97
분노 및 적대감	남	0.64(0.84)	0.32(0.66)	1.41
	여	0.15(0.50)	0.48(0.85)	-1.94
병적 집착·의심	남	0.92(0.82)	0.78(0.94)	0.53
	여	0.42(0.79)	0.61(0.88)	-0.94
가해자 위험 요인	반사회적 생활양식	남 0.21(0.57)	0.05(0.22)	1.43
		여 0	0.05(0.33)	-0.97
정신건강 문제	남	0.92(0.91)	0.54(0.83)	1.44
	여	0.69(0.98)	0.55(0.85)	0.61
일방적 사고	남	0.78(0.97)	0.35(0.71)	1.74
	여	0.30(0.63)	0.51(0.85)	-1.15

구분	온라인 (남14, 여33)		오프라인 (남37, 여35)		t
		M(SD)	M(SD)		
반성 부재	남	0.64(0.92)	0.45(0.80)	0.69	
	여	0.21(0.54)	0.37(0.68)	-1.05	
대인관계 문제	남	0.71(0.82)	0.45(0.76)	1.03	
	여	0.54(0.83)	0.37(0.73)	0.91	
물질사용 문제	남	0	0.05(0.32)	-0.61	
	여	0.91(0.38)	0	1.40	
고용 및 재정문제	남	0.42(0.64)	0.10(0.39)	2.15*	
	여	0.24(0.56)	0.11(0.32)	1.16	

주: * $p < .05$

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상담 현장에서 스토킹 위험성을 분별하고 사전 예방과 대상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 중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이별 후 재회를 희망하며 상담을 신청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기 질문지와 접수 상담일지를 스토킹 위험성 평가표(K-SAS)로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인과 이별 이후 재회를 희망한 일반인 중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은 연령, 교제 대상자의 연령, 교제 대상자와의 만남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스토킹 행위를 한 집단에서는 스토킹 범죄특성 중 온·오프라인 스토킹, 가스라이팅, 협박, 자살·자해 위협, 스토킹 지속성 등과 가해자 위험요인 중 분노 및 적대감, 집착, 정신건강 문제, 일방적 사고, 반성의 부재, 대인관계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실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은 대상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 스토킹을 한 집단과 하지 않았던 집단은 물질사

용 문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Nijdam-Jones et al., 201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를 한 집단은 분노 및 적대감, 병적 집착, 일방적 사고, 반성의 부재와 같이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가해자 위험요인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별 후 구애하는 행위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과 행동(Dunlop, et al., 2015)이 스토킹 행위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연인관계 종결 후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일반 성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미행과 자해·자살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더 빈번하게 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문제라는 가해자 위험요인이 남성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남성의 경우 대상자에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줄 수 있는 미행과 자해·자살 위협을 보이는 행동을 하며 2차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Finnegan et al., 2017).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유형보다는 스토킹 가해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 취약 요인인 정신건강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낯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불행히도 이런 예외적인 약점노출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높인다(Chung, & Sheridan, 2021).

셋째, 첫 만남의 경위를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스토킹 행위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진 집단의 경우 고용 및 재정문제라는 가해자 위험요인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의 점진적 심각성은 오프라인 만남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오프라인 공

격성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의 경우 관계에 대한 추상적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 오프라인의 경우 외현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차이를 나타냈다(유환희, 김재철, 2017). 고용 및 재정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만남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만남 중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에 보다 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만남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의 점진적 심각성이 온라인 만남 집단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유환희, 김재철, 2017).

넷째, 첫 만남의 경위를 온·오프라인과 성별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온라인 집단에서 고용 및 재정문제는 가해자 위협요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오프라인 집단이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점진적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상 공격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 온라인 상에서 남성은 협소한 시야와 부정적 상상을 통해 관계를 인지하는 반면, 여성은 개인적 고통을 보다 더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격성을 나타냈다(Ang & Goh 2010).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관계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외현적 공격성을 실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유환희, 김재철, 201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첫 만남 유형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온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한 남성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한 남성에 비하여 고용 및 재정문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남성에 비하여 미행, 감시, 폭행 등 외현화된 공격성

을 시도하는 것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만남을 추구하는 남성의 경우 시야가 협소하고,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Ang & Goh, 2010), 남성의 고용 및 재정문제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야를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겠다.

오프라인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집단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스토킹 가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는 낮았다. 다만, 여성 스토킹의 개인적 취약요인(정신건강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병적으로 집착하여 스토킹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재회상담 및 교육에 있어 성별과 첫 만남 경위(온·오프라인)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상담자가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연령대에 따라 스토킹을 바라보는 관점 및 시야가 다르고, 스토킹을 사랑의 구애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적지 않다(박예은, 곽대훈, 2022). 타인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부정적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상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단호한 행동수정 요구, 상담 기관 및 단체에 구체적인 내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한 대상 중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상황이 악화되지만, 실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온라인 집단은 위협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한 대상이 오프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실제로 가지는 스토킹 위협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Wood, 2003). 이는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온라인 상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의 보편성(Generality of violence)에 따라 IPV 가해자를 파트너 한정 가해자(Partner-Only violence: PO)와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eneral Violence: GV)로 구분한 Boyle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PO의 특성은 파트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친사회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son, Strand, 2020a; 2020b). 이와 같은 결과 때문에 실제 위협성을 주위 사람들이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채회상담 현장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을 유추함으로써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은 외 2021).

국내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위협요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별 및 첫 만남 경위를 세분화하고, 개입방법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핵심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지 여부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초기 진단지와 접수 상담일지를 활용하였기에 대상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 확인의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명확하고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반인 중 스토킹으로 112신고 및 경찰 조사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유형 및 위협요인을

수치화하기 위해 스토킹 위험성 평가표(K-SAS)를 활용하였다. K-SAS는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화를 추출한 척도이다. 그러나 일반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스토킹 유형 특성을 범죄자와 동일한 10가지의 유형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및 현상학적 연구 등을 통해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토킹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별과 온·오프라인 영역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상자 중에서는 동성과의 연애 후 이별을 겪은 경우가 존재했으며, 온라인(만남 어플, 동호회 블로그, 채팅 등)과 오프라인(지인, 소개팅, 길거리만남 등) 모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기엔 연구대상의 수와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성 간의 연애뿐만 아니라 동성 간 연애, 온라인 영역에서의 스토킹,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스토킹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실제적인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은, 이희원, 조은경 (2021).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른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가해자의 유형과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 *보호관찰*, 21(2), 169-202.
- 권혜림 (2022). 일반인들의 스토킹 행위 범죄성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8(2), 1-19.
- 김보화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19(2), 3-43.

- 김성희, 이수정 (2022).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32(2), 117-152.
- 김정혜, 박보람, 정다운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아 (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 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109-137.
- 동아일보 (2021). [단독] '스토킹처벌법' 서둘렀다면 세 모녀 참변 없었다. (2023. 12. 7. 인출)
- 박예은, 광대훈 (2022). 세대 차이에 따른 스토킹 인식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49-64.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세계 각국의 스토킹 범죄 규정.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49820&AST_SEQ=3891#
- 세계일보(2019).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남성 1심 무죄... "스토킹방지법 도입 시급". (2023. 12. 7. 인출)
- 연합뉴스 (2021). 게임으로 만나 호감 갖다 거부당 하자 세 모녀 잔혹 살해. (2023. 12. 7. 인출)
- 연합뉴스 (2023). 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송금 메시지...스토킹 벌금 400만원, (2023. 12. 9. 인출)
- 유환희, 김재철 (2017). 온 오프라인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 특성 비교, *교육연구*, 25, 45-73.
-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 (2023).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강력범죄화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스토킹 사해자 유형 논의를 통한 가중구성요건 신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4(3), 321-352.
-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정, 강지은, 이혜지, 홍정윤, 김승혜, ... 김소연. (2023). 스토킹 고위험군 식별을 위한 범죄심리학적 판단 지표 개발. 서울: 대검찰청.
- 이승희, 이창배 (2023). 스토킹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의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20(3), 167-184.
- 이해담, 김지현 (2023). 스토킹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안전문화연구*, 23, 67-86.
- 한겨레 (2023). [사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 (2023. 12. 7. 인출)
- Ang, R. P., & Goh, D. H. (2010).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nd gender.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1, 387-397.
- Boyle, D. J., O'Leary, K. D., Rosenbaum, A., & Hassett-Walker, C. (2008). *Differentiating between generally and partner-only violent subgroups: Lifetime antisocial behavior,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impulsiv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1), 47-55.
- Chung, K. L., & Sheridan, L. (2021). *Perceptions of stalking in Malaysia and England: the influence of perpetrator-target prior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4), 1-7.
- Cupach, W. R., & Spitzberg, B. H. (2004). *The dark side of relationship pursuit: From attraction to obsession and stalking* (1st ed.). Hoboken, NJ: Taylor & Francis.
- Dunlap, E. E., Lynch, K. R., Jewell, J. A., Wasarhaley, N. E., & Golding, J. M. (2015). *Participant gender, stalking myth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ing in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Psychology, Crime &*

- Law*, 21(3), 234-253.
- Finnegan, H. A., Timmons, F. P. A., & Horrobin, B. (2017). *Differential effects of gender on canadia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stalk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4), 468-482.
- Gross, L. (1999). *Surviving a Stalker*. New York: Marlowe & Co.
- Johnson, S. D., & Wood, M. J. (2023). *The Impact of Stalking on Victim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1), 2335-2353.
- MacKenzie, R. D., Mullen, P. E., Ogloff, J. R., McEwan, T. E., & James, D. V. (2008). *Parental bonding and adult attachment styles in different types of stalk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3(6), 1443-1449.
- McEwan, T. E., & Pathe, M. (2014). *Stalking*. In G. Bruinsma & D. Weisburd (Eds.), *Encyclopedia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p. 5026-5038). New York, NY: Springer.
- Meloy, J. R. (1996). *Stalking (obsessional following): A review of some preliminary stud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147-162.
- Meloy, J. R., & Fisher, H. (2005). *Some thoughts on the neurobiology of stalking*.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0(6), 1472-1480.
- Meloy, J. R., & Gothard, S. (1995).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2), 258-263.
- Meloy, J. R., Rivers, L., Siegel, L., Gothard, S., Naimark, D., & Nicolini, J. R. (2000). *A replication study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1), 147-152.
- Mohandie, K. (2004). *Stalking behavior and crisis negotiation*. *Journal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4(1), 23-44.
- Mohandie, K., Meloy, J. R., McGowan, M. G., & Williams, J. (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147-155.
- Mullen, P. E., Mackenzie, R., Ogloff, J. R., Path, M., McEwan, T., & Purcell, R. (2006).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in the stalking sit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34(4), 439-450.
- Mullen, P. E., Pathe, M., & Purcell, R. (2009). *Stalkers and their victims* (2nd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n, P. E.,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1244-1249.
- Nijdam-Jones, A., Rosenfeld, B., Gerbrandij, J., Quick, E., & Galietta, M. (2018). *Psychopathology of stalking offenders: Examining the clinical, demographic, and stalking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based sampl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5), 712-731.
- Petersson, J., & Strand, S. (2020a).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in relation to arrest: differentiating between partner violent perpetrator subtypes*. *Nordic Journal of Criminology*, 21(2), 203-222.
- Petersson, J., & Strand, S. J. M. (2020b). *Family-Only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1(2), 367-381.

- Roberts, K. A. (2002). *Stalking following the breakup of romantic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of stalking former partn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7(5), 1-8.
- Senkans, S., & McEwan, K. (2023). *Gender Differences in Postrelationship Stalk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8(10), 2319-2332.
- Senkans, S., & McEwan, K., Ogloff, J., R., P.(2021). *Assessing the link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ostrelationship stalking: A gender-inclusive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772-802.
- Sheridan, T. P., Blaauw, E., & Davies, G. M. (2003). *Stalking: Knowns and Unknowns*. *Trauma, Violence, & Abuse*, 4(2), 148-162.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14). *The dark side of relationship pursuit: From attraction to obsession and stalking* (2nd ed.). Abingdon, UK: Routledge.
- Thompson, C. M., & Dennison, S. M. (2008). *Defining relational stalking in research: Understanding sample composition in relation to repetition and duration of harassment*.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5, 482-499.
- Zona, M. A., Sharma, K. K. & Lane,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a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8(4), 894-903.

투고일자: 2023. 12. 27.

심사일자: 2024. 1. 23.

게재확정일자: 2024. 2. 13.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dults involved in Stalking after terminating Romantic Relationships

Hyeji Kang Ji Hae Lee Na-Kyung Seong Hyun Jun Sung Jieun Kang Donggyu Hong

Luv.d Co., Lt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Kyonggi University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study identified risk factors of stalking among general adults. For this reason, we examined whether previous stalking offenses, gender, and initial encounter characteristics cause differences in stalking risk factors. For the study, questionnaires and intake counseling records from individuals (51 males and 68 females who ended their romantic relationships but desired to reunit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les exhibited more threatening behaviors such as pursuit, self-harm, and making suicidal threats, while females were highly prevalent of mental health issues. Second, males who initially met their partners online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employment and financial issues. Females who initially met their partners offline, showed higher levels of persistent and severe stalking behavior.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danger of stalking behavior, as it can frequently occur in relationships involving individuals who are not criminals. Furthermore, it is vital to consider the client's gender and initial encounter characteristics with their partners for reunion counseling case formulation, and intervention planning. The results also suggest the importance of stalking risk assessment and stalking prevention programs for clients in reunion counseling practice.

Keywords: stalking behavior, reunion counseling, gender differences, initial encounter characteristics, online meetup, offline meetup